담배 때문에?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본 흡연과 학교 문제 토론회

목차

발제 흡연하는 청소년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치이즈 / 아수나로 서울지부 | 1-6쪽

토론 1 - 서울시교육청
하형주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 7-8쪽

토론 2 - 학생 이반 / 고등학생 | 9-10쪽

토론 3 - 교사 흡연문제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은?
권혁이 / 광명 운산고 교사 | 11-13쪽

일시 2016년 11월 28일 오후 6시 반—8시 반
장소 흥사단 강당 (4호선 혜화역 인근)
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인권교육센터 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제: 흡연하는 청소년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치이즈(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많은 학교에서 '흡연'은 징계의 최고 수위를 도맡는다. 그것이 '퇴학'이든, '출석 정지'나 '특별 교육 이수'든, 흡연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징계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학칙은 학교라는 사회 안에서 거스를 수 없는 법처럼 작용하고 있었지만,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학칙에 무관심했다. 학칙의 징계 사항은 대부분 학생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교사와 학교 관리자에 의해 임의로 쓰인 것이다. 그 징계 사항들이 적절한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와중에 흡연하는 청소년에 대한 징계는 그들을 향한 교사와 관리자, 사실상 사회 전반의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시선을 그대로 반영했다. 어떠한 문제의식 없이, 학교가 흡연하는 학생을 낙인찍고 퇴출시키는 것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학교가 흡연하는 학생들에게 부과하는 징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는 지난 10월, 서울 지역의 중고등학교들 중 200여 개를 임의 추출해서 학교알리미(학교정보공시사이트)와 각 학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 규칙을 조사하였다. 이들 중 학교생활규정이나 선도규정 등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제외하고 156개의 중고등학교들(고등학교 80개, 중학교 76개)의 공개된 학교 규칙들을 집계한 결과, 98.7%(154개)의 학교들이 학생의 흡연을 처벌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학칙들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한 부분은 흡연 처벌 학칙 유무, 흡연으로 가능한 최고수위 징계, 흡연 관련 물품 적발시 처벌 조항, 주민 신고로 교외 흡연 처벌 조항, 흡연검사(소변, 호흡) 관련 조항, 흡연 적발 회수에 따라 무조건 퇴학(N진아웃) 조항, 소지품검사 사유에 흡연 의심 존재였다.

중학교는 퇴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흡연을 이유로 가능한 최고 수준 징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누어 집계했다. 그 결과 조사한 고등학교의 68.8%가 흡연으로 인해 최고 '퇴학'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조사한 중학교 중 85.6%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와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퇴학 규정이 없는 중학교를 제외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비록 상대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흡연 적발 회수에 따라 무조건 퇴학 조치를 하는 등, 일명 '삼진아웃' 제도를 명시한 학교들도 21.8%였다. 이러한 조항은 학교에서 흡연을 얼마나 심각하고 엄격히 처벌할 문제로 다루고 있는지를 방증한다.

중고등학교 징계 수준 비교 표

징계 수준 \ 학교 수준	고등학교	중학교
없음	1.3%(1)	1.3%(1)
벌점	3.8%(3)	3.9%(3)

징계 수준 \ 학교 수준	고등학교	중학교
훈계 혹은 금연교육	0%(0)	1.3%(1)
반성문	0%(0)	0%(0)
교내봉사	2.5%(2)	2.6%(2)
사회봉사	2.5%(2)	2.6%(2)
특별교육이수	16.3%(13)	30.3%(23)
출석정지	2.5%(2)	55.3%(42)
퇴학	68.8%(55)	0%(0)
강제전학	1.3%(1)	2.6%(2)
기타	1.3%(1, 선도위원회 회부)	0%(0)

흡연 적발 회수에 따라 무조건 퇴학 조치를 하는 등, 일명 '삼진아웃' 제도를 명시한 고등학교 비율 표

N회 적발시 퇴학	고등학교 비율(빈도수)
3회	12.5%(10)
4회	13.8%(11)
5회	15%(12)
6회	1.3%(1)
관련 내용 없음	57.5%(46)

이처럼 흡연은 학교에서 '불량 청소년'을 내쫓을 수 있는 명분으로 여겨지고 있다.[1] 다른 징계 해당 행위보다 유난히 흡연과 관련해 엄격한 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흡연을 규제하는 이유를 학생의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학생이 건강을 해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학교는 개입하지 않는다. 흡연이 심각하게 규제되는 이유는 흡연하는 것이 '학생다운' 행동의 가장 끝에 있고, 어른만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버릇없이 '침범'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흡연 사실 적발을 위한 인권 침해 행위

[1] 이는 특히 서울에서 두드러지는데 2015년 기준, 전국에서 흡연을 이유로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135명 중 97명이 서울 지역에 해당한다.

학생들은 교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흡연을 한다는 사실이 적발되기만 해도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 흡연을 한다는 사실은 흡연 관련 물품 소지, 니코틴 검사, 교외에서의 흡연 행위 제보 등으로 파악되었다.

'시사인천'에 따르면 인천지역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흡연 단속을 위한 소변 검사를 실시했다. 해당 학교의 학생은 화장실도 아닌,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종이컵에 소변을 보도록 강요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국가인권위는 흡연을 단속하기 위한 소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 침해이며, 소변검사를 중지하고 인권친화적인 방법으로 대체할 것은 권고한 바 있다.

학칙에서도 중고등학교들 중 상당수가 흡연과 관련된 물품(담배, 라이터, 금연초, 전기담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처벌했다. 이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때 흡연을 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한 경우가 59.0%로 가장 많았다.

흡연 관련 물품 적발시 처벌 비율 표

관련 물품(라이터, 담배, 성냥 등) 적발 시	학교 비율(빈도수)
흡연 적발과 같게 처벌	59.0%(92)
처벌하지만 흡연 적발과 같게 대하진 않음	23.1%(36)
관련 내용 없음	17.9%(28)

학생이 학교 밖에서 흡연하는 것을 주민이 학교에 제보할 경우 처벌을 하는 학교들도 많았다.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언행'을 주민이 제보한 경우 처벌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학교들도 있었으나, 주민 제보를 흡연 적발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학교도 조사 대상 중 32.7%나 되었다.

흡연 학생을 주민이 제보할 시 처벌 비율 표

흡연 학생 주민 제보 시	학교 비율(빈도수)
흡연 적발과 같게 처벌	32.7%(51)
처벌하지만 흡연 적발과 같게 대하진 않음 ("학생답지 않은 언행 제보" 등 포함)	7.1%(11)
관련 내용 없음	60.3%(94)

일부 학교에서는 흡연 검사기를 이용하여 처벌하는 것을 학교 규칙에 명시해두고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호흡을 이용하여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 형태의 검사기로 보였다. 휘경공업고등학교 학칙에는 "흡연검사해서 수치가 10ppm 이하이면 벌점 10점"이라는 항목이 있었다.

또한 조사한 중고등학교 중 20.5%(32개)는 흡연 의심을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었다.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는 흡연자로 확인된 학생들의 손과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지 매일 조종례 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주 1회 가방 · 주머니에 담배 · 라이터 등의 소지를 확인한다고 학교 규칙을 정해두었다.

흡연 검사 및 징계 관련 표

흡연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이거나 검사를 거부할 경우	학교 비율(빈도수)
흡연 적발과 같게 처벌	12.2%(19)
처벌하지만 흡연 적발과 같게 대하진 않음	3.8%(6)
관련 내용 없음	84.0%(131)

한편, 흡연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는 흡연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었다. 단국대부속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했을 때 흡연으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성덕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간 불필요한 갈등을 막기 위해 학생이 담배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화장실 한 칸에 두 명 이상이 들어가는 등 의심되는 행위만으로도 흡연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학칙에 있었다. 게다가 흡연 시 함께 있거나 도움을 준 학생을 처벌하는 조항도 일부 학교가 가지고 있었다.

흡연시 도와주거나 같이 있었을 경우 처벌 표

흡연시 도와주거나 같이 있었을 경우	학교 비율(빈도수)
흡연 적발과 같게 처벌	9.6%(15)
처벌하지만 흡연 적발과 같게 대하진 않음	4.5%(7)
관련 내용 없음	85.9%(134)

흡연은 돌이킬 수 없는 죄

흡연 사실을 적발당하고 나면 퇴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권 침해가 뒤따랐다.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학생의 인권을 빼앗는 것은 다른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흡연은 보통 다른 징계 사유들에 비해 더 ‘특별히 심각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었다. 당곡고등학교, 예일디자인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흡연으로 인한 벌점은 다른 벌점 항목들과 다르게 상점으로 상쇄가 불가능했다. 광문고등학교에서는 흡연 학생의 명단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했고, 배명고등학교에서는 징계 4회가 특별 교육 이수의 조건인데 흡연은 곧바로 징계 3회로 간주되었다.

이 뿐 아니라 흡연을 했을 경우 기존에 보장해주던 기본적인 복지를 삭감하거나 보장해주던 학생 인권 관련 행위를 중단해버리기도 했다.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는 두발을 지도하거나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지만 흡연이 적발되었을 때는 두발을 지도하고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대일관광고등학교에서는 흡연이 2회 이상 적발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 학비지원, 급식지원, 포상, 대입추천, 취업 등을 징계 결정 이후에 전액 취소 및 보류할 수 있다고 하고 있었다.

과잉 징계와 과잉 금지의 원칙

흡연에 따른 이러한 징계들은 과연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학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명분 아래 어떠한 가혹 행위도 용납될 수 있을까?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적용되는 과잉 금지의 원칙에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있다. 이는 본래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있어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이다. 그만큼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부득이하게 제한해야 할 때에는 신중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흡연을 처벌하기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학교의 모습은 어떨까? 먼저 목적의 정당성의 측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것의 대외적인 목적은 학생들을 유해한 약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리고 비흡연 학생들을 간접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치자. 그러나 그 수단의 적합성을 생각해 보았을 때 가지고 있는 담배를 무조건 빼앗고,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학교에서 내쫓는 것이 담배를 더 이상 피우지 않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느냐고 묻는다면 수긍하기 어렵다. 단지 교사의 눈앞에서 담배와 담배 피우는 학생을 지운다고 해서 그 학생이 금연을 할 가능성을 매우 적기 때문이다. 흔히 알려져 있듯이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흡연자들이 금연을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중독성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금연을 하기 원한다면 금연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징계들은 학생들이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연을 해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퇴학을 당한 학생들은 학교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더 많이 담배를 피우게 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침해의 최소성을 적용해 본다면, 흡연 관련 징계는 심각하게 이 원칙을 위반한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해도, 그 목적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야 할 때는 그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출석 정지, 퇴학, 강제 전학과 같은 징계들이 흡연에 대한 대표적인 징계가 되었다. 또한 흡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의심이 가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소지품 검사를 하거나 몸에서 나는 냄새를 확인하는 것 등은 신체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 인권 침해는 불필요할 만큼 그 정도가 지나치다.

비슷한 맥락에서, 흡연 관련 처벌은 또한 법익의 균형성을 해친다. 법익의 균형성은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법익과 그 행위로 말미암아 희생되는 법익 간에 서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생이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어 얻는 권익은 그 학생이 퇴학당함으로써 희생되는 학생의 권익보다 큰가? 학생의 흡연을 처벌해서 얻는 이익이 흡연하는 학생을 학교 안에서 고립시키고 낙인찍음으로써 희생되는 학생의 이익보다 큰가? 둘을 비교했을 때 흡연 관련 처벌은 학생이 더 큰 손해를 입게 하고, 더 큰 권익을 잃게 만든다. 그러므로 흡연에 대한 징계는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하는 과잉 징계라고 할 수 있다.

흡연이 징계가 되는 이유

학교의 징계 항목은 사회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행위를 규정하고 처분의 정도를 규정하는 형법의 항목과 차이가 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품행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했을 때, 학생들을 선동하고 정치를 조장했을 때 처벌받는다. '형법상 유죄로 판결되었을 때'는 그저 학칙에 기재된 항목들 중 하나에 해당할 뿐이다. 형법에 규정된 죄보다 더 많고 세세한, 도덕적인 관습과 얽혀 있는 것들이 학교 징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비청소년들에게 그저 '권장'되는 도덕적 관습들이 학생들에게 '의무'가 되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죄로 징계가 부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청소년 사회에서도 흡연은 물론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취급받는다. 국가는 시민들에게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금연하도록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청소년은 흡연을 한다는 이유로 형벌을 받지 않으며, 흡연할 권리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 흡연실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흡연 학생은 흡연하는 비청소년보다 훨씬 더 가혹하고 반인권적인 처우에 시달린다. 학생의 흡연을 처벌하는 이유는 비청소년과 마찬가지로 흡연의 위해성으로부터 흡연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그 처벌이 흡연 학생의 기본적인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경우는 무시된다. 흡연이 어떤 점에서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징계를 한다면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사회적으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논의 없이 학생을 처벌하는 지금의 징계는 학생들에게 충분히 폭력적이다.

토론 1: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본 흡연과 학교문제 토론문

하형주(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흡연하는 청소년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발제문을 잘 보았습니다.

발제문 중 많은 학교에서 흡연 경험 자체와 관련 물품 소지까지 징계,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흡연에 대한 지도과정에서 소지품 검사나 소변검사 같은 인권침해적 방식까지 사용한다는 부분의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며 대체적으로 저희 서울시교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들어온 상담 사례와 유사합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의 흡연과 관련된 상담의 내용은 주로 흡연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와 소변검사 등이 부적절하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제문 중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은 특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학생인권교육센터로 들어온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 내에서 흡연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흡연 지도에 대한 주장에 대해 한번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흡연에 대한 지도 또는 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을 보면 학생들의 흡연지도에 관하여 교육방법을 정하는 것은 해당 학교 구성원의 재량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하고, 흡연할 권리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유래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속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항,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제지하고 선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과 그 제한의 결과로서 추구하는 청소년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보호의 공익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금연지도 관행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의 생활지도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여부인데요. 즉 학교 밖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몇 가지 주장으로 있습니다. 학교규정에 근거가 있다면 학교 밖 행위도 규제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등하교 길에서의 흡연은 지도할 수 있으나 방과 후 교육활동과 무관한 제3의 장소에서의 흡연은 지도할 수 없다는 주장, 학교에서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으로 학교 밖의 행위로 학생을 징계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학교 밖 흡연은 규제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학생 지도권은 학교 내에서만 미칠 뿐 학교 밖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흡연도구 소지를 흡연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반된 주장을 살표보겠습니다. 학칙으로 규정되어 있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흡연도구 소지를 제한하지 않으면 흡연지도가 무의미하고 현실적으로 흡연 현장을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주장은 소지품 검사하여 흡연도구를 적발하는 것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흡연도구 소지를 흡연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흡연측정기 수치를 측정하여 흡연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학칙에 규정되어 있으면 가능하다는 주장이고, 인권침해라는 주장 입장에서는 흡연측정기에서 일정 수치 이상이 나온다고 하여 반드시 흡연을 하였다고 볼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학교 밖 흡연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면 학교 밖에서 흡연을 하여도 흡연측정기에 나올 수 있음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흡연측정기 측정 자체가 학생의 인격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음은 흡연 만을 이유로 징계(퇴학)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가능하다는 입장에서는 학교규칙으로 강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흡연을 지도할 수 없고, 흡연은 다른 학생의 건강권을 침해함으로 징계(퇴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흡연은 선도의 대상이지 범죄가 아니므로 학생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계(퇴학)을 시킬 수 없듯이,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퇴학)을 할 수 없고, 단순 흡연으로 징계(퇴학)을 시키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퇴학 처분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신분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가혹한 처분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개전)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아직 배움의 단계에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본다면 교육상 필요라는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징계사유가 있고 다른 수단으로 금연지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사례를 소재해 드리고 마무리 할 까합니다. 흡연지도를 위해 소변검사를 한 사례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제13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를 규정한 학교규정 제·개정,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권고하였습니다. 취지를 설명드리면 금연을 유도하는 생활지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목적이 징계가 아닌 선도를 위한 것이어야 교육적으로 정당할 것이고 학생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인데 소변검사를 하는 방법에 있어 학생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소변검사를 자발적 의사라고 보기 어렵고, 금연지도의 다른 대체수간이 있었음에도 소변검사라는 방법을 택한 것은 학생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한 것으로, 학교에서도 흡연검사를 하는 것은 학생의 선도를 하는 순수한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야 하므로, 학교에서는 금연지도 목적, 수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토론 2: 학생인권의 관점에서 본 흡연과 학교문제 토론문

이반(고등학생)

지워지고 위협받는 청소년의 흡연

'청소년의 흡연권'하면 올해 10월에 백남기 농성장에서 일어나 SNS상에서 논란이 되었었던 일이 떠오른다. 비청소년들이 같이 농성을 하고 있던 청소년 녹색당원들이 흡연을 하고 있을 때 시비를 걸다가 경찰을 부른 일과 '담배 끄라,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나에게는 청소년들을 선도할 의무가 있다'며 소리를 질렀던 일이다. 흡연구역이나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를 폈는데도 그럴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와서 폭언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흡연자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중학생 시절 내가 살던 집 앞에서 같은 학교 남학생들이 무리지어 담배를 피고 있었을 땐 무서워서 그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빠르게 지나갔었던 기억이 난다. 그 남학생들은 내가 살던 동네 근처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담배를 피웠었는데, 내 친구 중 한명이 그 무리에서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을 보고 '여기서 뭐하냐, 너희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이랑 아는 사이인데 내가 엄마한테 말하면 들킬거다'라고 말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 뒤로 집 근처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걸 본적이 없다. 아마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간 것이었을 거다.

청소년들은 집 근처나 학교 근처에서 담배를 피울 때는 학교에 주민 제보가 들어가거나 동네 주민들이 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알릴까 걱정해야 한다. 인터넷 Q&A에선 집 앞에서 흡연하는 청소년은 학교에 신고하면 된다는 답변들이 돌아다니고, 내가 사는 지역의 PC방 화장실 문 앞에는 '학생이 흡연할 시 부모와 학교에 일괄적으로 연락 하겠다'는 안내문이 화장실 문 앞에 거의 협박조로 써 있기도 하다.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주위 사람들에게 흡연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가족들이 집에 없는 금요일 밤에만 흡연을 한다.

길거리에서 청소년 흡연자에게 아니꼬운 시선을 보내는 것을 넘어서, 선도를 한다며 시비를 걸고 폭언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길거리나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길래 훈계를 했는데 그 청소년들이 '감히 어른에게 말대꾸를 하더라'는 이야기는 꽤 자주 들려온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흡연할 공간은 학교를 벗어나더라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흡연하는 청소년의 존재는 지워지고 위협받는다.

'과도한' 징계가 문제일까?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일탈'이 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법을 대신하여 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흡연 선도'의 선두에 서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흡연을 규제한다며 '삼진아웃제'나 소지품 검사, 니코틴/소변 검사 등을 실시해왔다.

발제문에서 충분히 살펴보았듯이 지금 현재 대다수의 학교에서 흡연을 과도하게 징계하거나 흡연을 적발하려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 흡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최고수위의 징계인

퇴학을 당한 청소년의 수만 180명이다. 징계의 수위를 낮추는 것과 적발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없애는 것은 당장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다. 애초에 비청소년의 경우와 다르게 청소년의 흡연을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게 인정되어 왔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은 정당한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학교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한 금연교육(흡연예방교육)에서는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며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담배에 더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이유를 대곤 한다. 하지만 발제문에서 지적 했듯이 흡연에 대한 학교의 징계는 학생들이 금연을 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답지 않게' 흡연하는 학생을 낙인찍고 배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건강이나 인권보다는 사회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학생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염색이나 파마, 교복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것, 흡연 등을 '문제아나 하는 짓'이라고 규정해놓고 처벌한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생다움을 강요하고 흡연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같은 학교 내의 교사들이 하듯 학생들도 같이 담배를 피러나갈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에도 흡연구역이 만들어져야한다. 금연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청소년 흡연자의 존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토론 3: 흡연문제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은?

권혁이(광명 운산고 교사)

흡연 문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골치아파하는 분야이다. 작년 3학년 학생들 10여명이 교실에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지속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워 이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해달라며 교장실에 투서가 들어갔고, 결국 교실에서 흡연을 한 학생들이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았는데, 일부 학생들의 부모들은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학교를 곤경에 빠뜨린 적이 있었다. 당시 선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나는 졸지에 법조인에 맞서 법률적인 대응을 한 적이 있었다. 또 학교 주변 아파트에서 하교를 하면서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 흡연을 하는 문제는 더욱 교사들을 힘들게 한다. 아파트 주민들이 담배냄새와 꽁초,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비교육적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항의하거나 심지어는 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 퇴근시간 이후 임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지도하는 시늉이라도 내야한다.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학교에서 생활교육의 분야에서는 가장 어려운 것이 흡연문제임에는 틀림없다. 흡연 문제에 대해 학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올바르고 교육적인가?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교실에서 흡연을 하는 건들이 발생하면 아마 학교에서는 '강력한 징계' 카드를 꺼내기 십상일 것 같다. 내가 있는 학교도 2014년 흡연 건이 끊이지 않자 학년말 교사들의 평가회를 통해 흡연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니 강화하자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그리하여 2015년에는 흡연 1회부터 바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 이 전에는 흡연 적발 3회까지는 공식 징계없이 상담과 학년부 차원의 벌을 주던 터였다. 그 결과 2014년 6건(교내봉사 3건, 특별교육 2건, 출석정지 1건)에 불과했던 흡연 징계는 2015년 무려 30건이 넘는 징계가 이루어졌다. 징계에는 출석정지 등의 중징계 처분도 상당히 많았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흡연에 대해 학생들을 중징계 하더라도 학생들의 흡연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아예 배제징계, 즉 퇴학을 시키면 되지 않나?' 적지 않은 학교에서 흡연 관련 삼진아웃과 같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흡연을 하면 학교에서 퇴출시킨다? 과연 흡연이 무엇인데 그렇게까지 징계를 하는 것인가? 나는 흡연은 구성원들 간 합의를 통해 규칙을 정해 징계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교복착용도 비슷한 건이 될 터인데, 교복을 입든 입지 않든 그것은 구성원들이 정할 문제이고, 구성원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했을 때 교복을 입지 않고 등교하는 경우 벌칙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벌은 정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흡연에 대해 출석정지나 퇴학과 같은 중징계를 주는 것이 마치 도로에 차가 오지 않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의 처벌을 내리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물론 흡연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전혀 가지 않는 것은 아닐 것이다. 냄새를 통해 불쾌한 기분이 들게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간접흡연으로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교실 내에서 흡연을 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학교 주변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렇게 피해가 되는 경우는 피해를 감안하여 징계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학생이 학교 주차장 구석에서 숨어서 담배를 피웠다고 하자. 이 학생은 구성원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는 거의 끼치지 않았다. 이 학생에게 어떤 벌을 내릴 것인가. 구성원들이 교내 흡연에 대해 정한 규칙을 적용해야겠지만, 교사로서 생각해볼 때 이 학생은 학교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일 뿐이다. 그 동안 보아온 흡연을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거나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해 소외된 학생들과 상당부분 겹쳤다. (물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 수업내용은 잘 못 따라가서 소외되고, 그러다보니 학교생활은 재미없고, 선생님들은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 받고, 나 같은 아이들끼리 어울리다보니 담배 피우게 되고, 그러다 걸려서 징계받고, 그렇게 악순환의 연속이다. 학교가 이런 학생들을 중징계한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

우리 학교로 돌아오자. 2015년 흡연에 대한 엄정 징계 방침은 실패했다. 아이들은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흡연 적발이 반복되어 출석정지의 중징계를 받아도 아이들은 학교에 안나가도 되니 더 좋아한다. 흡연 건수가 줄지도 않았고 징계가 두려워 '정상'적인 학생으로 돌아오지도 않았다. 결국 2014년 체제로 되돌아왔다. 단, 교사회의와 학급회의 등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논의과정을 거쳐 흡연 1회부터 3회 적발까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부모님께 편지쓰기, 만다라 그리기, 금연일기 쓰기, 사제동행등반, 사제동행캠프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였고, 4회부터는 선도위원회 회부되는데 올해 흡연 적발 누적만으로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거의 없다. 교사들이 흡연을 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부적응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라고 생각의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결과 교사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학생들도 교육프로그램을 곧잘 이행하고 있는 편이다. 몇 달 전 흡연을 하여 함께 등산을 가게 된 여학생 두 명이 있었다. 이 학생들은 학교 선생들로부터 꽤나 악명?^^; 높은 편이었는데,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자신들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꽤나 불안해하고 있는 눈치였다. 왜 아니겠는가. 담배피우고 출결 안 좋다고 자신들에 대해 걱정이 없겠는가. 한 녀석은 올라가면서 엄청 투덜거리고 못 가겠다고 징징 댔는데, 나중에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무척 뿌듯해했다. 산을 내려와서 간단한 소감나누기를 진행하였는데, 힘들었지만 뿌듯하고 보람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즐거워했다. 이 녀석은 나한테 적발된 친구였는데 이후에 문자도 주고받고 복도에서 보면 나에게 반가운 표시를 한다. 그러나 수업시간에 보면 여전히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녀석이다.

심각한 문제가 또 있다. 바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호소와 민원이다. 엄청 화가 나서 전화를 한 주민들은 한참을 퍼붓다가 하소연으로 바뀐다. 물론 학교의 법적인 책임은 없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도 아니고 학교 일과가 끝난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기관이고 우리는 선생 아닌가. 우리 학생들, 학교의 구성원들이 주민들에게 끼치는 피해에 대해 선생으로서 모른 척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화받다 보면 혹은 붉어진 얼굴로 직접 찾아온 주민들 상대하다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하지만 감정적인 접근은 안 된다.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이럴 때 일수록 구성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한다. 학급회의 안건에 부쳤다.

학급자치회의

□ **안건**: 학교주변 흡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대책
□ **제안설명**
: 학년 초부터 학교 주변에서 운산고 학생들의 흡연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

습니다. 방과 후에 운산고 학생들이 여러 명씩 모여서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는데,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외지도를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지도하면 다른 곳에서 피우는 방식으로 '풍선효과'가 지속되어 지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주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내서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운산고의 구성원들이 끼치는 주민 피해, 대책이 없을까요?

□ **진행요령 [회복적 써클 방식]**

- 일반적인 학급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1) 담임선생님이나 학급반장이 안건의 제안설명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2) 모든 책상은 교실 한쪽으로 치우고 의자로 원(써클)을 만든다.
(원을 만드는 이유- 우리 모두가 평등하며 공동체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설명)
(3) 담임선생님이 써클 규칙을 이야기 합니다.
(토킹스틱-일종의 마이크로 어떤 물건이든 상관없습니다. 필통이나 인형, 음료수병 등-을 가진 학생만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이를 어길 경우 벌칙-엉덩이로 이름쓰기 등-을 받는다.)
(4) 이번 주에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을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이야기하게 합니다.
(5) '내가 아파트 주민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에 대하여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6) 교외흡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해봅니다.
(7) 의견이 수렴되면 반장은 이를 종이에 적고 이를 2층 교무실 민주시민교육팀으로 제출합니다.

내가 아파트 주민이라면 무척 짜증나고 화가 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사실 회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두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의도는 흡연을 하는 학생들이 주민의 입장이 되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제안되었다. 그 결과 '금연캠페인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꽤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봉사시간을 받고 싶은 학생들도 있었겠지만 의미있는 활동에 동참하고자 신청한 아이들도 적지 않았다.

흡연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이다. 이 글을 쓰는 오늘도 주변 아파트 주민이 항의성 전화를 걸어왔다. 힘들다. 하지만 나는 학생문제로 힘들어야 되는 교사다. 어떤 경우에도 '교육적인 접근'을 하자. 그리고 구성원을 믿자.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구성원에게 맡기고 구서원도 해결 못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흡연 문제에 대해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을 하자는 제안으로 글을 맺는다.